

# 생활체육위원회 규정

제정 2018. 1. 23.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근거 및 명칭)** 대한민국농구협회(이하 “본 회” 라 한다) 정관 제38조에 따라 생활체육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**제2조(목적)** 이 규정은 생활농구 각종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등 생활체육 전반의 활성화와 한국농구 저변확대에 그 목적을 둔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본 회의 목적과 사업 취지에 맞는 업무의 일환으로 생활 체육 및 유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한다.

**제4조(기능)**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, 심의한다.

1.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에 관한 사항
2. 생활체육 농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3. 생활체육농구대회 주최, 주관 및 각종 대회 개최 승인에 관한 사항
4. 유소년 농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5. 유소년 선수 등록 및 교실 등록제에 관한 사항
6. 시·도 농구단체 생활체육 지도와 지원에 관한 사항
7. 기타 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

##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

**제5조(구성)** 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장 1명
2. 부위원장 1명
3. 위원 7명 이상 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
②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본 회 정관 제26조(임원의 결격사유) 제1항, 제2항, 제3항, 제4항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2.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%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 동일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%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.
-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**제6조(위원의 위촉)** ①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**제7조(위원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**제8조(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 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
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9조(위원의 해촉)**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 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.

1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제13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5.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
**제10조(회의소집)**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.

**제11조(의결정족수)**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2조(긴급한 업무처리)**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.

**제13조(제척 및 회피)**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본인이 제1항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피할 수 있다.

**제14조(경비의 지급)** 정관 제40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,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5조(기타사항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체육회 규정 및 본 회 정관, 기타 규정을 준용한다.

## **부 칙(2018. 1. 23.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(2018. 1.23.)를 통과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.